

# 2023년 남중동 종합감사 결과 보고

## I 감사개요

- 감 사 기 간 : 2023. 3. 7. ~ 3. 9. (3일간)
- 감 사 범 위 : 2020. 11. 1. ~ 2023. 1. 31.
- 감 사 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 사 중 점
  -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 주민자치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 II 지적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10건	시정 1 주의 9	회수 1	주의 4
1	사무의 인계인수 소홀	주의		
2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출 부적정	주의		주의 2
3	각종 회의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OO)	주의 1 (2번 병합)
4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주의		
5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6	지방세 제증명 발급 부적정	주의		
7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급 업무 부적정	주의		
8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작성 관리 소홀	주의		
9	주민등록등·초본 업무 처리 소홀	주의		
10	외국인 체류지 변경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주의 2

## 1. 사무의 인계인수 소홀

- 「익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항에 따르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 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및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에 의하면 제2조에 해당하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남중동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사무인계인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출 부적정

-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는 중앙동 등 29개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피복비, 야식비, 차량유류비를 일반보상금에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자율방범대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 집행 관리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 관련 안내 지침」을 행정지원과-9188(2017.4.1.), 행정지원과-2146(2018.1.22.) 공문을 통해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 안내 지침」에서는 방범대는 운영비 개별통장을 생성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카드 영수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타카드 영수증 불인정), 순찰근무일지를 통해 방범활동에 따라 운영비가 적절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남중동에서는 야간 청소년 선도활동 및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활동 지원 등 지역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교부 및 정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남중동 자율방범대 전용 신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대원)로 간식비 및 유류비 ◇건, □□□원을 부적정 집행하였고, 타지역(◎◎)에서 유류를 구입하였음에도 아무런 지적 없이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3. 각종 회의 수당 지급 부적정

-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7조(실비보상)에 따르면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지원)에 의하면 익산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남중동에서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장 및 부녀회원에게 참석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4.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항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의 확인)에 의하면 시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하나,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2022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야 하며,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청취를 받고,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 남중동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명에게 재판정 통보기준일(재판정 기한일 3개월 前)보다 최장 ★일까지 지연하여 안내하였고, 재판정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 대상자 ◎명에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하여 재판정 촉구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

## 5.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며, 본인 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 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 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을 발급 받는 경우 분실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남중동에서는 2021.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대리인이 신청한 2021년 ◆◆건, 2021년 ◇◇건에 대하여 대리인 신분증 및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였으며, 수령안내 통지 1년이 지난 ◎건에 대하여 관할 부서에 보고 및 송부 파기토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자가 기록도 없이 자체 파기하는 등 청소년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6. 지방세 제증명 발급 부적정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에 의거 지방세의 과세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매뉴얼」에 따르면 제3자[납세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소지한 자]가 ‘개인’의 지방세 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방세 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가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남중동에서는 지방세 제증명 위임 신청시 위임자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날인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미제출하였음에도 보완요청 없이 발급하였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7.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급 업무 부적정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같은 조례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제27조(준용규정)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 위 조례에 따라 남중동에서는 대형폐기물 신고 수수료를 납부받고 폐기물스티커를 교부하고 있으며, 교부한 폐기물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가져오는 경우 환급을 진행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급금은 수수료 납부자에게 지급 되어야 하고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 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징구하였어야 했으나, 남중동에서는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정당한 채주가 아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8.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작성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등(이하 “인감증명서 발급기관” 이라고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남중동에서는 인감증명서 위임내역 기재와 대리인 무인 날인 등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으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인감 위임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 무인을 누락하는 등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작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9. 주민등록등·초본 업무 처리 소홀

-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한 후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한 사람란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현주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행정안전부)에는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소송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위임장, 주소보정명령서, 등·초본 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피고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장이란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서명 또는 날인), 위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남중동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위임 발급 시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받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위임자 신분증(사본)을 미첨부하였고, 제3자에게 위임하여 소송 관련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시 신청인으로부터 ‘등·초본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을 제출받아야 하나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별지 제9호서식)’ 을 제출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는 등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0. 외국인 체류지 변경 업무 처리 소홀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에 따르면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sup>1)</sup>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체류지(국내거소)변경 신고 및 각종 증명발급 업무편람」(법무부)에는 체류지변경일(전입일)로부터 15일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인 경우에만 처리하고 기관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별 제출서류로는 (1)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2)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3) 체류지 입증서류이며, ‘체류지 입증서류’ 는 ① 동거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②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③ 숙소를 제공받는 경우 숙소를 제공한 자가 작성한 숙소제공확인서 등이 필요함.

1) 「출입국관리법」 개정(‘20.06.09. / ’20.12.10.시행) : 기존 14일 → 15일 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에 따르면 체류지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체류지변경일에서 15일 이내 신고의무를 준수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동법 제103조(벌칙금의 양정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 벌칙금을 납부한 후 체류지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17조(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제8항에는 증명발급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전자적 확인으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체류지(국내거소)변경 신고 및 각종 증명발급 업무편람」(법무부)에는 체류지(거소이전) 변경 또는 각종 증명발급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관련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서 여백에 동의 받은 사실(동의자, 동의시간)을 기재하여 보관하여 문제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남중동에서는 전입일 이후 15일이 경과한 신청인에 대하여 관할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 벌칙금을 납부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해당 읍면동행정복지 센터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체류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신청서 여백에 동의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수리하는 등 외국인 체류지 변경 업무 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